

# 特別企劃人리즈

## 아시아地域工業所有權制度

- …… 이 글은 지난 83年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에서 아시아地域 각국 特許廳을 통하여 調査, 發刊한 「THE SITU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 THE COUNTRIES OF ASIA AND THE PACIFIC」를 基本으로 하여 作成한 것이다.

◎ 第4回 ◎

### ● 싱가포르(2) ●

#### (d) 意匠에 關한 主要規定

英國에서 意匠登錄된 者는 英國에서의 登錄이 싱가포르에서도 登錄된 것으로 看做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權利도 싱가포르에서 누릴 수 있다.

#### (e) 特徵標章에 關한 主要規定

##### (i) 保護받는 標章의 種類

商標(商品用)(條例, 2 및 9條) 證明商標(商品用)(條例, 68條)

##### (ii) 保護받을 수 있는 標章

考案, 品質表(brand), 表題, 레테르(label), 티켓, 名稱, 署名, 單語, 文字, 數字 또는 이들의 結合(條例, 2條)

##### (iii) 權利獲得

商標 또는 證明商標를 使用할 權利는 登錄으로 获得된다. 그러나 未登錄商標의 侵害에 對한 損害賠償이나 새로운 소송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許與받을 수 없다. (條例, 45(1), 46(1), 49 및 68(2)). 同一하거나 類似한 商標의 同時 使用의 경우에, 所有者가 多數인 商標의 登錄은 審判이나 登錄官에 의하여 許與될 수 있다. (條例, 25)

싱가포르內에서 해당 商品과 關聯하여 2年以上 어떤 標章을 善意로 使用한 者는 그 標章을 登錄出願할 權利를 가진다. (條例, 25)

다른 사람이 同一한 商品에 同一하거나 類似한 標章

을 使用 또는 登錄하기 前부터 계속적으로 使用된 標章은 간접 받거나 禁止되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標章은 앞에 언급한 標章이 登錄되었다는 事實만으로는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 (條例, 48(2))

##### (iv) 海外에서의 出願 또는 登錄의 効果

英國 또는 英國과 標章의 相互保護을 위한 協定을 맺은 나라에서의 登錄 또는 登錄出願된 標章은 싱가포르에서 그 標章의 登錄을 위해 6個月間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 경우에는 해당국에서의 出願日을 싱가포르에서의 出願일로 본다. 이와 같은 우선권은 그 협정에 加入한 他國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條例, 71)

(지금까지, 우선권을 보장하는 국가는 계속 증가하여 45個國에 이르고 있다). 심유제 품과 관련된 標章이 싱가포르내에서 登錄되려면 그에 앞서 英國에서 登錄 또는 效力を 가진 것이어야 한다. 登錄은 단지 英國에서 登錄한 所有權者나 그의 法的 계승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條例, 15(2))

##### (v) 登錄節次; 公告

出願申請을 하면 形式審查 및 調査를 包含한 내용심사를 받게 된다. 出願에 대하여 속고한 뒤에 登錄官은 상황에 따라 후은 칙권으로 拒絕할 수도 있고 받아 들일 수도 있다. (條例, 11, 12, 15, 68(10)) 出願이 되면 公報에 告示된다.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公告日로부터 2個月이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條例, 18, 19, 68(11), 施行規則 37, 41)

##### (vi) 獨占權의 範圍

標章의 登錄으로 登錄權者는 指定商品에 그 標章을 사용할 獨占權을 갖는다. 만일 獨占權을 갖지 않은 사람이 同一 또는 類似한 어떤 標章이나 그 標章이 登錄

된 指定商品의 商去來에 混同을 일으킬 慮慮가 있는 登錄標章을 使用한 경우에는 그 獨占權을 侵害한 것으로 看做된다. (條例, 45, 46 및 68(2))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登錄에 의해 賦與된 商標權이 어떤 사람의 그러한 標章의 使用으로 侵害당하였다고는 看做하지 않는다.

(a) 商標權者 또는 登錄使用權者가 去來上 關係가 있는 商品에 관하여 그商品 또는 그商品이 일부가 되는 商品群에 그商標를 通用하고 난뒤 除去 혹은 삭제하지 않았거나 또는 明示的 혹은 默示的으로 그商標의 使用을 承諾하고 있는 경우

(b) 一部 또는 附屬物로 만들어진商品이나 그商標가 侵害의 사용된 다른商品에 關하여는, 그標章의 使用이 指定된商品을 表示하기 위하여合理的으로 필요한 경우나 그標章의 使用目的 및 效果가 어떤 사람과 그商品사이의 관계를 그事實의와에는 表示하지 않는 경우. (條例, 45(3) 및 68(4))

登錄商標의 所有權者나 登錄使用權者는 어떤者が 이를商品들에 관해 언급된商標를 그名稱의 所有權者나 先使用權者가 使用 또는 登錄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使用한商品에同一하거나類似한商標를 使用하는 것을 간접하거나 禁止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使用이 立證될 경우에 그者が 그들商品에 관해 그商標를 登錄하는 것에 異議를 제기할 수도 없다. (條例, 48但書條項)

어떤商標의 登錄으로 어떠한者が 자신 또는 그의前營業者의姓名 또는營業所名을 善意로 使用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또한 누군가가 所有權者나 그의登錄使用者 또는 그의商品과 矛盾적인 관係이 있는것 같은 表示가 아닌 그商品의性質과品質을 善意로 表示하는 것도 干涉받지 않는다. (條例, 52)

#### (vii) 存續期間 및 維持

出願日로부터 7年間(條例, 21 및 32) 存續期間満了日로부터 14年間 登錄을 更新할 수 있다. (條例, 34 및 35)

#### (viii) 使用 義務

登錄商標는 다음의 경우에 利害關係人이 法院이나 登錄官에게 申請함으로써 指定商品에 關해 原簿에서 抹消할 수 있다. 商標가 그所有權者가 指定한商品에 대해 그것을 使用할 善意의 의도없이 登錄되었을 때, 그商標의 所有權者가 申請日 1個月前까지 指定한商品에 對하여 그商標의 善意의 使用을 實際로 하지 않았을 때, 또는 申請日로부터 1個月前까지 그商標가 登錄된

또는 善意의 使用을 하지 않은 기간이 5年以上 경과되었을 경우이다. (條例, 40(1))

商標는 去來上 特殊상황으로 여겨지는 非使用, 取消 또는 非使用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登錄抹消되지 않는다. (條例, 40(3))

創造語로 構成된商標가 登錄에 關聯된指定商品들에 關하여 잘 알려져 있거나 非指定商品들에 대한 그商標의 使用이 指定商品에 關聯한商標를 使用할 권리가 있는 사람과 非指定商品 사이의去來上關係를 表示하는 것으로 使用되었을 경우에는, 그商標가 非指定商品들에 使用되지 않거나 使用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非指定商品들에 對한防護商標로서 그商標所有權者的 이름으로 登錄될 수 있고 登錄된동안에는 非使用을 이유로 이를 非指定商品에 關하여 抹消되지 않는다. (條例, 41(1))

登錄된 使用權者에 의한 商標의 使用은 그商標의 所有權者에 의한 使用으로 간주된다. (條例, 30(2))

法院 또는 登錄官은 하나의 登錄聯合商標 또는 그同一性을 實質적으로 損傷시키지 않는附加 혹은 變更을 한商標의 사용은 이條例에 근거하여 指定된 實施義務를 갖도록하여 허락할 재량을 가진다. (條例, 29(단서조항))

登錄된商標全體의 使用은 또한同一所有權者の名義로 登錄된 그一部의商標의 使用으로 看做된다. (條例, 27)

輸入商品의商標는 싱가포르에서 出願함으로써 이를商品에 對한 使用要件을 구성한 것으로 看做될 수 있다. 또한 그들商品이 國內市場用이라면 해당國家에서 使用되어었던商品들에 관하여 싱가포르내에서 취해진 그밖의 行爲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條例, 72(1))

#### (ix) 讓渡 및 實施權 許與

##### 讓渡

登錄商標는 指定商品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하여營業과 함께 또는營業과 分離하여 讓渡할 수 있다. 营業과 分離하여 이루어진 讓渡는 登錄官의 지시로公告될 때 까지 効力を 가질 수 없다. (條例, 42(1)(2)(7))

未登錄商標가 登錄商標와同一한營業에서 使用되어 졌거나 登錄商標가 移轉된商品과 관계하여同一者에게 同時に 移轉되었다면 登錄商標와同一한方法으로 讓渡될 수 있다. (條例, 42(3))

商標가 讓渡의 결과로서同一商品 또는商品表示에 관하여 득점권이 2以上의者에 속하게 되거나同一 또

는 類似한 商標의 使用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商標는 讓渡될 수 없다. (條例, 42(4))

商標가 讓渡의 결과로서 서로 다른 사람이 싱가포르의 다른 지역에서 한정된 標章이나同一商品 또는 商品表示에 관하여同一하거나 類似한 商標의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면 让渡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登錄官이 이러한 환경에서의 商標의 사용이 公共의 이익에 反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이러한 让渡를 인정할 수도 있다. (條例, 42(6)(a))

聯合商標는 分離되지 않은 全體로서만 让渡 및 移轉될 수 있다.

出願이나 登錄의 主體가 된 어떤 商標가同一商品 또는商品表示의 관점에서同一所有權者의 이름으로出願 또는 登錄의 主體가 된 다른 商標와同一한 경우나 혹은 그 商標가所有權者가 아닌 사람에 의해 使用되었다면, 오인 혹은 혼동을 일으킬 만큼 類似할 때에는 登錄官은 그 商標가聯合商標로登錄되도록 要求할 수 있다. 덧붙여 다음의 事項은聯合商標로看做한다; 全體商標에 부가하여 개별적으로 등록된 商標의部分, 한가지 登錄에 연속물로서 登錄된 商標, 및 잘 알려진 商標와 그와 관련된 防護商標(條例, 26, 27, 28, 29 및 41(3))

讓渡 및 移轉等으로 登錄商標의 權利를 인정받고자하는 者는 登錄官에게 그 名稱이 登錄되도록申請해야 한다. 登錄되지 않은 让渡 및 移轉은 登錄官이나 法廷에서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 (條例, 43)

### 實施權 許與

證明商標와 다른 商標의 경우에는 누구나指定商品의 全部 또는 어떤 범위에 관하여 그 商標의 登錄使用權者로登錄될 수 있다. (條例, 30(1) 및 68(16))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商標의 登錄使用權者로서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商標權者와 연루하여 登錄官에게申請해야 한다. 이때에는 實施權許與 계약서와所有權者와 使用權者 사이의 세부적인 관계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登錄官은 이를 審查한 뒤 公益의 차원에서 拒絕하거나 許諾할 수 있다. (無條件으로 혹은條件이나 制限下에) (條例, 30(4), (5) 및 (6))

### (f) 消費者 保護에 關한 主要規定

어떤 商標가同一商品 또는商品表示에 關하여 다른所有權者에 의해 이미 登錄된 商標와同一하거나 오인될 程度로 類似하다면 登錄받을 수 없다. (商標條例, 23)

만일 登錄使用權者가 그 商標를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혹은 일으킬 우려가 있도록 使用했다면 登錄을 取消할 수도 있다. (商標條例, 30(8)(c)(i))

去來 또는 營業의 경우에 허위 去來表示를商品에適用하거나 廣告에 이러한 表示를 使用한 者는 처벌을 받는다. (消費者 保護條例, 4 및 7(1))

商標條例의 의미내의 商標나 商標의一部가 되는 去來表示는商品들에 관하여 使用할 때 다음의 모든 條件을 충족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 去來表示가 된다.

一. 消費者 保護條例가 통과되기 전에 使用한 경우.

一. 消費者 保護條例의 施行日까지 그 商標가 商標條例를 근거로 登錄되었거나 혹은 指定商品과 所有權者間의 去來上 연결을 表示하는데 使用되었을 경우.

一. 適用된 商標가 商標條例의 근거 하에 그商品들과 所有權者 혹은 登錄使用權者間의 연결을 表示하는데 使用되었을 경우.

一. 그 商標의 所有權者 혹은 계승자가 消費者 保護條例 施行日 당시의 所有權者와同一한 者일 경우. (消費者 保護條例, 8)

商品에 그商品과 관련된 指示事項 혹은 去來表示를 包含하든지 않하든지 어떤 정보를 表示 또는 동반하는 것이 그商品을 供給받는 사람들에 이익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해당장관은 그러한 事項을 表示 또는 동반시킬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위반시에는 그商品의 供給을 제한 또는 禁止시킬 수 있다. (消費者 保護條例, 9)

### (g) 採擇 혹은 使用되는 國際分類

단지 商品에 관하여 使用된 表章의 登錄을 目的으로 하는 商品 및 營業을 위한 國際分類(規則, Ⅲ)

### (h) 訴訟節次의 所管 官廳

#### (i) 異議申請

特許 및 意匠: 規定이 없다.

商標: 異議申請은 商標登錄官에 의해 判定된다.

登錄官의 決定에 不服할 時에서 法廷에 提訴할 수 있다. (條例, 19(4)(5))

#### (ii) 無 効

特許나 意匠의 登錄無効는 上級審에서 결정된다. (特許施行令, 9, 意匠施行令4), 登錄商標의取消는申請人の 선택에 따라 法廷에 要求할 수도 있고, 그에 앞서登錄官에게 要求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登錄官의 決定은 法廷에 의해 变복될 수도 있다. (商標條例, 39,

61 및 64)

## (iii) 侵害

特許 및 意匠: 規定敘述

商 標 : 法廷에 試訟을 제기할 수 있다.

## 2. 政府 所管部處

## (a) 名稱 및 住所

**Registry of Trade Marks and Patents, 305 Tanglin Road, Singapore 1024**

## (b) 所屬: The Ministry of Law

## (c) 機能: 다음의 主要機能이 있다.

- 一. 特許나 商標의 出願 接受
- 一. 形式審查 및 商標에 관해서는 内容審查
- 一. 異議申請된 商標의 審理
- 一. 特許, 商標 및 強制實施權許與의 登錄

## (d) 다른 國家 혹은 國際機構와의 關係

外國의 工業所有權 官廳과의 협정도 있고 技術開發分野에 대한 2개국간 혹은 多國間의 프로그램에도 현재까지 參加하지 않고 있다.

## (e) 職 員

登録官 및 登錄官 대리외에 14名의 職員이 있는데 그 中에서 3名이 行政관이고 11名이 事務員이다.

## (f) 資 料

싱가포르 特許集 및 약간의 特許개요는 Registry of Trade Marks and Patents에서 利用할 수 있으나 技術情報은 SISIR (the Singapore Institute of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 3. 統 計

## (a) 特 許

年 度	出 願			登 錄		
	内國人	外國人	計	内國人	外國人	計
1978	2	632	634	2	546	548
1979	—	864	864	—	735	735
1980	2	631	633	1	548	549
1981						
1982	4	644	648	3	516	519
1983	5	852	857	3	388	391

## (b) 商 標

年 度	出 願			登 錄		
	内國人	外國人	計	内國人	外國人	計
1978	1932	2615	4547	749	1634	2383
1979	1986	3113	5099	494	866	1360
1980	2072	3051	5573	784	1715	2499
1981						
1982	3008	3879	6887	615	1474	2089
1983	2664	3994	6658	727	1995	2722

## ■ 特許 情報 ■

## (1) 政府 所管 部處 또는 機關

The Singapore 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SISIR), (179 River Valley Road, Singapore 0617, Maxwell Road, PO Box 2611, Singapore 9046)

이 기관은 政府內 또는 個人에게 科學 및 技術情報 를 提供하는데 主任務는 The Industri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ITIS)이다.

## (2) 資 料

SISIR은 1979年 부터의 新法 및 1971年 부터의 舊法에 근거하여 發給된 特許 및 1979年 이래 美合衆國에서 發給된 特許에 관한 資料를 가지고 있다.

SISIR은 DIALOG Information Service, INFOLINE 및 SDC Orbit에 의해 提供되는 資料와 연결되는 online을 가지고 있다. (昂)

가 정 에 서 뿐 린 정 직

사 회 에 서 꽂 핀 신 뢰